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2. 11 Vol. 38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9 2. 관련법령

Ⅱ.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9 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정무위원회

21 2)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23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5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7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30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31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3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환경노동위원회

38 1)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국토교통위원회

43 2)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6 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54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61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5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71 5)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73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4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0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1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2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85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V.

본회의

88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90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92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6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집

1. 구성
2.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16 | 현원 16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6 | 비교섭단체 1

위원장
홍 익 표

선 거 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전북 전주시갑
재선(19대, 21대)

위원
유정주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이개호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이병훈
광주 동구남구을
초선(21대)

위원
이상헌
울산 북구
재선(20대, 21대)

위원
임오경
경기 광명시갑
초선(21대)

위원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갑
선(20대, 21대)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재선(20대, 21대)

위원
김승수
대구 북구을
초선(21대)

위원
김예지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배현진
서울 송파구을
초선(21대)

위원
이 용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황보승희
부산 중구영도구
초선(21대)

정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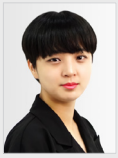

위원
류호정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 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한국문화원연합회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뉴스통신진흥회
	(주)연합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재)정동극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재청 소속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만인의총관리소
	궁능유적본부(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문화재청 공공기관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1	문화예술진흥법
		2	국어기본법
		3	도서관법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	공연법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7	지방문화원진흥법
		8	대한민국예술원법
		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향교재산법
		1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3	예술인복지법
		14	작은도서관 진흥법
		1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6	공예문화산업진흥법
		17	문화기본법
		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	독서문화진흥법
		21	지역문화진흥법
		22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콘텐츠산업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영상진흥기본법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콘텐츠산업진흥법
		7	저작권법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9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미디어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광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부문		번호	소관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	한국관광공사법
		6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체육	1	국민체육진흥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	경륜·경정법
		4	스포츠산업 진흥법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7	전통무예진흥법
		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9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10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11	국제경기대회지원법
		12	씨름 진흥법
		13	학교체육진흥법
		14	생활체육진흥법
	사행산업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청	문화재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	문화재보호법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5	문화재보호기금법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환경부와 공동 소관)
		7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6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17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O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O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여성가족위원회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867호

이 용 빈

선 거 구	광주 광산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20. 제안

제안이유

소액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아니함.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의 개별적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누설 · 변조 · 훼손 또는 공개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강제주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에 대해서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대표당사자가 되려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법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해당 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피해 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의 범위 변경, 소취하 · 화해 · 청구포기 · 상소취하 · 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제3항, 제26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

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6조).

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7조).

차.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0조).

카.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타.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고 분배관리인의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함(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파.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 대한 배임수 · 증재, 몰수 · 추징 등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2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94호

윤 창 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31. 제안

제안이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 · 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 ·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그래서 동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집중하였음.

디지털자산의 발행 · 상장 · 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 · 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 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며,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은 기존「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덧붙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 ·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

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 ·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 · 조사권한,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 · 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054호

오 기 형

선 거 구	서울 도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1.02. 제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안 제2조제4호).

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안 제4조).

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정무위원회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165호

김 성 환

선 거 구	서울 노원구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1.08. 제안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1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의6제2항).

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을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30조).

5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87호

이 용 호

선 거 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 당	국민의힘
당선 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3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진출 가속화로 인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87호

이 정 문

선 거 구	충남 천안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1.04. 제안

제안이유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58호

김 영 주

선 거 구	서울 영등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2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 제4항 신설 등).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96호

이 용 빈

선 거 구	광주 광산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3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발전 · 송전 · 배전 · 전기판매사업 · 구역전기사업 등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런데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하여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

9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012호

이 종 성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1.0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되어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10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115호

고 민 정

선 거 구	서울 광진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1.04.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자유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마.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사.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자.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차.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카.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타.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파.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정보화기본법안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3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4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5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7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O	1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강은미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063호

강 은 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2.23.	제안
상임위원회	2022.05.0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11.08.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 · 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의 설치 근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자료

[저탄소 부문 일자리 전망]

구 분	신산업 부문	제조 부문	발전·수송 부문
산업	▪ 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 ▪ 차세대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등) ▪ 저탄소 신산업 (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바이오·그린수소 등) ▪ 기후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그린서비스·벤처 등) ▪ 순환경제 (재생원료, 재제조 산업 등)	▪ 철강 ▪ 석유화학 ▪ 시멘트 ▪ 정유 ▪ 반도체·디스플레이	▪ 내연기관 자동차 ▪ 석탄화력발전
전환 방식	▪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공정개선	▪ 사업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단기적 사업축소 및 노동전환 수요 제한적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가시화

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7.

[디지털 부문 일자리 전망]

구 분	신기술 부문	삶의 질 부문	자동화·온라인 대체
산업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전문과학서비스 등	▪ 의료(바이오) ▪ 보건 ▪ 문화	▪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 자동차 제조 ▪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 금융보험 등
직종	▪ AI·클라우드·빅데이터로봇 분야 수요 확대 ▪ IT+금융·의료·유통과 결합 → 新 직업군 출연	▪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 판매종사자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상시적·점진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7.

[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의 비교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정안
적용범위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 과정에서의 피해
적용대상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주체
시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선 의원님 세 분 안이 있는데 저희가 목적조항에서는 이 법 자체가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제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이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적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임이자 의원님이나 이수진 의원님 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동전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전환에 대한 목적조항에서 저희가 노사 모두 이게 구조조정이나 업무의, 직무의 어떤 전환 등을 사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목적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강은미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나, 여러 가지 사회 주체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환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의규정들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 이수진(비) 위원

선제적인 지원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적인 지원이랑 전환이랑은 저는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노동자들이 원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바꾸거나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한 거고. (중략) 이게 앞으로 이제 한 20~30년 안에 대대적으로 다들 이 전환에 따라서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라면 사후적으로 그냥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임이자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강은미 의원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적에서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정부가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의견을 물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목적의 어떤 취지나 이런 내용들이 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어쨌든 의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단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환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전환이 일어나고 난 뒤에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다 지원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안에서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노동전환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저희도 의견을 들어 보니 노동전환이 꼭 구조조정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중립적으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또 이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수진(비) 위원

잠깐만요.

그게 오히려 고용불안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현장에서요. 노동전환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로 보이고 고용불안 이것은 이미 해고를 하거나 그 일자리를 없애거나 이게 다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정리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마치 다그냥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현장에서는 '우리를 다 내보내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구나', 오히려 노동자들은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요. 되게 다르네요, 받아들이는 게.

■ 소위원장 김영진

선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이은주 위원

선저는 좀 전에 차관께서 설명할 때 고용노동부가 이 전환법과 관련해서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말하자면 산업전환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누구보다 그분들 입장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제가 아니었다는 것에 저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사회 이행 과정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체들이, 내 문제거든요. 이 주체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를 떠나서 이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또 취약계층들, 피해를 실제로 입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많아요. 그걸 국가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체들의 참여가 목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영진

이주환 위원님.

■ 이주환 위원

원래 법이라는 게 제일 첫 조항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이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제정법 발의하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임이자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을 볼 때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다름이 없는데, 임이자 의원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한다'를 한마디로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노동전환'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하신 것 같고 그 축약의 의미의 차이를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어사전에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따지기는 힘듭니다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떻게 전환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약방문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전환 과정에서 아니면 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좀 원활하게, 그 불안을 최소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목적조항을 잘 선택을 해서 지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영진

논의 진행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2일 날 다시 한번 논의하니까 오늘은 개략적으로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숙지하고 22일 날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깊은 것보다는 개략적인 의견을 좀 주시고 그때 진술인 의견 듣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1번 목적·정의 관련한 것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요.

다음에 3항부터 다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것 목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 말씀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건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결국 고용불안이나 이수진 의원님 안의 노동전환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두 목적조항을 합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주체에 대한 참여도 꼭 고민해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안정에 관한 조치를 우리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목적이 되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환에 따라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의 목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쪽에 목표를 삼는 법이 되어야 탄소중립 기본법이나 이런 법들과 중복도 피할 수 있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드러나고 저희도,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정책을 수행하거나 자원을 동원하는 데 편하고 좀 쉽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그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 이은주 위원

선제적으로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 주체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영진

전환의 목적과 정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요.

2

국토교통위원회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06719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18.	제안
상임위원회	2021.03.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021.09.28.	상정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11.08.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수소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은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 · 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 사업을 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시험시공하거나 우선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도시 시범사업 추진(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 · 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현행 수소 관련 법률 및 법률안 비교

구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본방향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중점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등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조성하여 실제 수소경제사회 이행 및 실천에 중점
계획체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의무 규정, 또한 국가가 주도하여 수립·시행	국가차원에서 5년 단위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는 자체수소도시계획 수립
공간범위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창업·사업화, 기업유치,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 육성, 연료전지 설치 유도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기반시설, 공공·민간 서비스 등과 연계함으로써 수소기술의 실용화 및 주민 실제 생활에서 체험
사업목적 및 방식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해제, 연료전지 설치 등 특정목적	도시계획 및 개발과 융복합되어 수소가 모든 산업에 관여될 수 있는 수소경제플랫폼 마련
추진체계	산업진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유통은 한국가스공사, 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전담기관 지정	종합계획 수립, 신기술 지원 등 법정업무를 국토교통과학진흥원, LH, 연구기관 등 업무특성에 적합한 공공기관 위탁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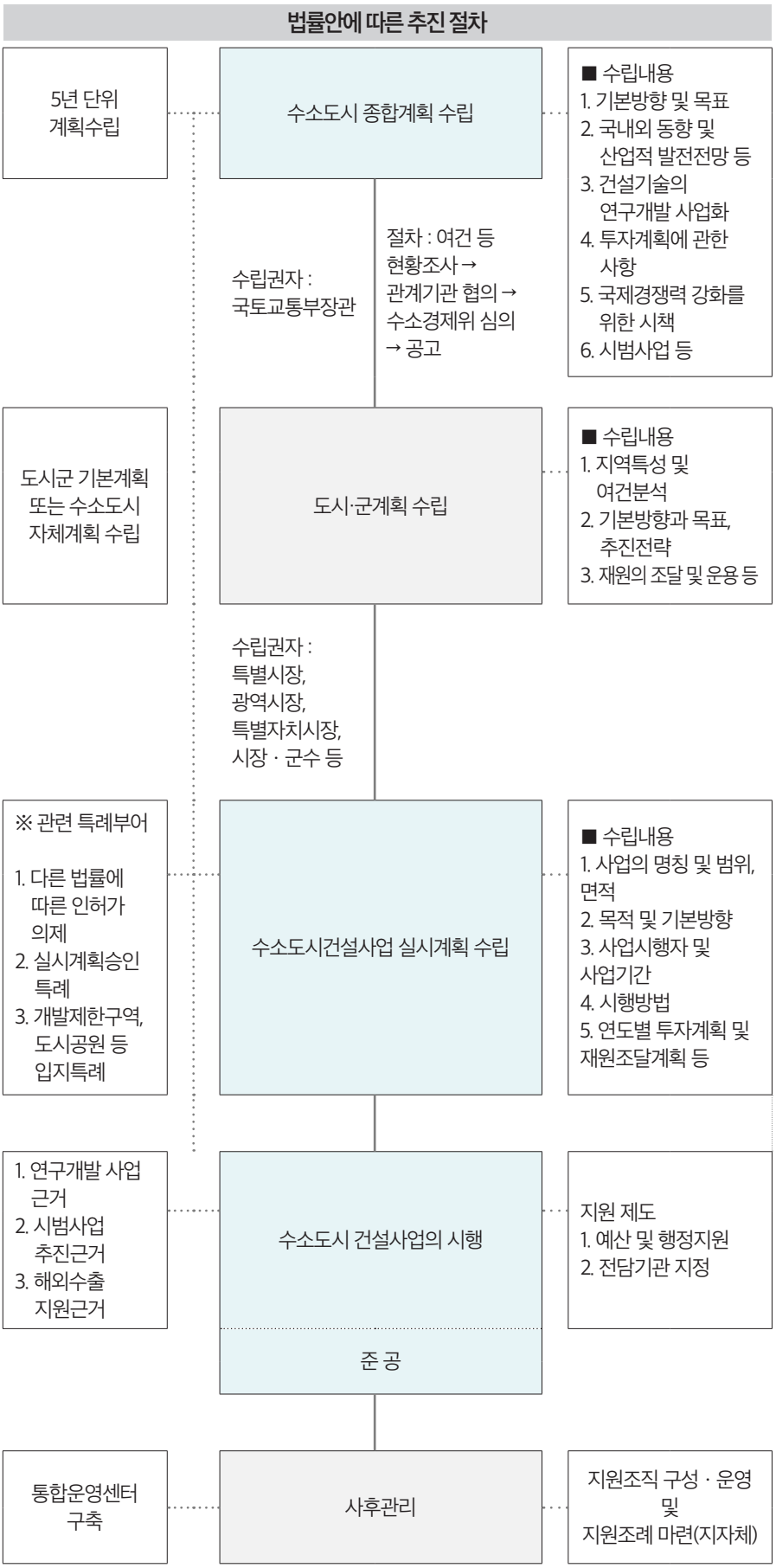
법률안에 따른 추진 절차
5년 단위 계획수립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
■ 수립내용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내외 동향 및 산업적 발전전망 등
3.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4.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6. 시범사업 등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절차 : 여건 등 현황조사 → 관계기관 협의 → 수소경제위 심의 → 공고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수소도시 자체계획 수립
도시·군계획 수립
■ 수립내용
1. 지역특성 및 여건분석
2.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등
※ 관련 특례부여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2. 실시계획승인 특례
3.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등 입지특례
수소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 수립내용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면적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4. 시행방법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1. 연구개발 사업 근거
2. 시범사업 추진근거
3. 해외수출 지원근거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
준 공
지원 제도
1. 예산 및 행정지원
2. 전담기관 지정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후관리
지원조직 구성 · 운영 및 지원조례 마련(지자체)

3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603호

이 헌 승

선 거 구	부산 부산진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 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20.	제안
상임위원회	2022.0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5.16.	상정
		축조심사
	2022.11.0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 · 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 ·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 · 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 ·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 ·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 ·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참고자료

참고1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분야 민간투자 사업현황

◈ 총 17개 사업 : (운영) 6개, (공사) 7개,(계획) 4개 사업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공사 기간	시행단계 (운영기간)
운영 (6)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T2~서울역	63.8	32,956	'01~'10	민자 운영 중 ('07~'40)
	소사~원시	부천 소사역~ 안산 원시역	23.3	13,669	'11~'18	민자 운영 중 ('18~'38)
	신분당선 강남~정자	강남역~정자역	18.5	12,223	'05~'11	민자 운영 중 ('11~'41)
	신분당선 정자~광교	정자역~광교역	12.8	11,199	'11~'16	민자 운영 중 ('16~'46)
	전라선 익산~신리	전북 익산역~전남 신리역	34.1	5,915	'07~'12	코레일 운영 중 ('12~'32)
	경전선 함안~진주	경남 함안역~경남 진주역	20.4	3,714	'08~'13	코레일 운영 중 ('13~'33)
확정 (7)	GTX-A	파주 운정역 ~ 삼성역	45.1	29,017	'19~'24	공사중 ('19.6 착공)
	GTX-B	인천 송도역 ~ 남양주 마석역	80.1	57,351	미정	기본계획 중
	GTX-C	경기 덕정역 ~ 수원역	74.8	43,857	미정	사업자 모집 중
	부전~마산	부산 부전역~경남 마산역	32.7	12,073	'14~'21	공사중 ('14.6 착공)
	대곡~소사	고양 대곡역~부천 소사역	18.4	11,752	'16~'21	공사중 ('16.6 착공)
	신안산선	안산·시흥~여의도	44.7	33,465	'19~'24	공사중 ('19.8 착공)
	신분당선 용산~강남	용산역~강남역	7.8	8,721	'16~'24	신사-강남 공사중('16.8 착공)
제안 및 검토 (4)	원종~홍대	부천 대장~원종~홍대입구	18.4	18,689	미정	민자적격성 조사중
	일산선 서북부 연장	대화~운정~금릉	10.7	9,099	미정	민자적격성 조사중
	위례~과천	복정~경마공원	15.2	12,245	미정	검토중
	신안산선 2단계	여의도~서울역	5.7	9,853	미정	검토중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2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전체사업				'21년 집행(계획)			
		사업수	총 투자비 (A+B)	민간 투자비 (A)	정부 재정 (B)	사업수	합계 (a+b)	민간 투자비 (a)	정부 재정 (b)
전 체(합계)		**89**	**45.7 (100.0)**	**29.1 (63.7)**	**16.6 (36.3)**	**67**	**3.5 (100.0)**	**2.4 (68.6)**	**1.1 (31.4)**
철도	공사중	6	12.9 (28.2)	7.9 (61.2)	5.0 (38.8)	6	1.5 (42.9)	0.9 (60.0)	0.6 (40.0)
	신규착공	1	1.6 (3.5)	0.8 (50.0)	0.8 (50.0)	1	0.1 (2.9)	0.03 (30.0)	0.07 (70.0)
	실시협약체결	2	5.9 (12.9)	2.9 (49.2)	3.0 (50.8)	2	0.01 (0.3)	0.01 (100.0)	0 (0.00)
	소 계	9	20.4 (44.6)	11.6 (56.9)	8.8 (43.1)	9	1.6 (45.7)	0.9 (56.3)	0.7 (43.8)
도로	준공	5	5.2 (11.4)	2.9 (55.8)	2.3 (44.2)	5	0.5 (14.3)	0.3 (60.0)	0.2 (40.0)
	공사중	5	9.1 (19.9)	5.9 (64.8)	3.2 (35.2)	5	0.6 (17.1)	0.5 (83.3)	0.1 (16.7)
	신규착공	3	0.9 (2.0)	0.8 (88.9)	0.1 (11.1)	3	0.1 (2.9)	0.1 (100.0)	0 (0.0)
	실시협약체결	6	3.4 (7.4)	2.4 (70.6)	1.0 (29.4)	6	0.0 (0.6)	0.0 (100.0)	0 (0.0)
	소 계	19	18.6 (40.7)	12 (64.5)	6.6 (35.5)	19	1.1 (31.4)	0.9 (81.8)	0.2 (18.2)

*총투자비: 2021년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들의 투자비(민간투자비+건설보조금+보상비) 총액
*철도: 국가관리 6건, 국고보조 지자체 관리 3건
*도로: 국가관리 8건, 국고보조 지자체 관리 3건, 지자체 관리 8건
자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 중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에서 수치 인용

참고3 민자철도 사업 단계별 사업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 업무

단계별 주요 과업		기존	사업 관리기관 선정이후('17년)
기본설계 및 협상	• RFP 수립 (민투심 상정) • 우선협상자 선정 • 협상 및 기본설계	• RFP, 사업자 선정 등 절차일체를 **국토부** 위주로 시행	• 민투심, 협상 지원 등 공단의 참여 확대 • 공단이 시행자의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실시설계 • 설계VE 및 설계감리 • 환경 • 교통영향평가 •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 환경. 교통영향평가, 기관 협의 등을 **국토부**가 시행 • 토목, 건축, 시스템 등 분야별 **심층검토**는 곤란	• 사업관리기관(공단)의 사전검토를 거쳐 인허가, 협의 시행 • 설계 내용에 대한 기술검토 강화 효과
공사 및 보상	•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 공사의 착수 • 공사의 도급 • 용지보상 • 총사업비 변경 • 설계변경 • 공정관리 • 공기연장/단축 검토 • 기성검사 • 민원처리 • 안전/환경/품질관리 • 건설보조금 지급	• 사업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감리)는 민간시행자 일임 - 현장상황을 주무관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공정차질 발생우려 높음** • **총사업비/설계변경**은 시행자가 국토부에 직접 요청 - 총사업비/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민원대응을 민간시행자가 전담하면서 **악성민원화**	•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공공의 통제강화 - 사업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감리)는 공단이 감독하여, 선제적으로 공정관리 • 증액없는 총사업비 변경은 공단 승인(**증액되는 경우 공단 사전검토** 후 우리부승인) • **설계변경**은 공단내 설계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 민원에 대해 공단이 초기부터 대응하여 관리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 준공검사/확인 • 관리운영권 설정 • 시험 및 시운전 • 유지관리/운영계획 수립	• 국토부 본부에서는 **준공검사/확인**이 사실상 곤란 • **시험/시운전**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곤란	• 공단이 미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 시험/시운전은 사업관리기관(공단)이 승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성과 점검/평가 • 정부지급금(운영) 지급 • 출자자/지분 변경 • 자금재조달	• 성과는 시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위주로 점검** • 출자자/지분 변경, 자금재조달 계획 등을 **우리부가 검토 처리**	• 사업관리기관(공단)이 시행자 제출보고서 검증 • 출자자/지분 변경, 자금재조달은 공단이 1차, 우리부가 2차 검토시행

자료: 국토교통부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 민홍철 위원

이 법률안이 정말로 잘 작동이 되려면 여기 15페이지 보면 개정안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필요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부산-김해 경전철을 비롯해서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이것 민자철도 다 했잖아요, BTL사업.

■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 민홍철 위원

MRG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걸 국가가 유지·관리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빼 버리고 국가, 자기가 하는 사업에는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민자도로 이것은 사실은 고속국도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민자로 건설해서 운영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유료도로? 이 고속국도 제외하고 어디입니까? 거제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건 또 쏙 빠졌어요.

유일하게 민투법에 의해서 유료도로에 지원센터가 있다라고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그건 고속국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것 고속도로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가 민투로 해서, 민투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했나요? 국가가 권유하고 지원해 줘서 한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더 어렵고, 유지하고 재무 재구조화라든지 MRG 문제라든지 이율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도시철도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철도, 여기 고속철도, 광역철도는 지원해 주고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 도시철도는 빼 버리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걸 넣어야 됩니다. 차관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 최초로 그때부터 BTL사업 시작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도시철도—경전철이지요—해 왔는데 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제발 국가에서 운영이라도 좀 해 달라 해도 안 돼요. 처음에 중앙 재정이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지방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그게 최초의 BTL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은 국가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민자사업으로 가는 이런 것을 점점점 더 쉽게 지원해 주고 운영 편리를 봐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지방의 도시철도까지 민자사업으로 간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대구 경전철도 마찬가지지요, 대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지자체장 소관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소관이 지자체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는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도시철도법 개정 전에…… 그래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행 조건으로 지자체가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이런 게 먼저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도시철도법 개정 전에라도 만약에 민자철도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여기에서 지자체 자문이나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하고 저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차관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맞지요. 그런데 민투법에 의해서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민자 한도를 제한해 주고 한 것은 다 기획재정부가 처음부터 관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토부가 관

여를 했고요.

국가의 인프라 아닙니까, 철도·도로 이게. 그러면 이 운영지원센터 이런 어떤 개념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경영의 노하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 줘야지 국가가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센터만 법률에 만들어 주고 지방도시철도는 제외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이윤상

위원님, 철도국장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금 개정하려는 철도사업법은 국가가 소관하는 철도 그러니까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이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 도시철도법 내용을 여기다 포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철도사업법 내에 이 법체계가 완성이 되면 추후에 도시철도법의 이 철도사업법 개정된 이 규정을 준용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체계를 갖춰 주고 추후에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민홍철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이 철도사업법의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법안에다가 준용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이윤상

예, 이 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만 하면 됩니다.

■ 민홍철 위원

그것은 부기로 좀 해 주세요. 부대의견으로 좀 해 주시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초창기에 BTL 사업으로 갔던 사업들이 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초창기에 했던, 그때 아마 노태우 정부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초기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부담이 각 지자체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중앙정부가 관리할 때가 됐다 저는 그리 봅니다.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O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6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O	7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O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O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북한자료의 수집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1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재외동포보호법안
		1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3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외교통일위원회		24	한 · 중남미재단법안
		2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1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군인급식기본법안
		1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O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O	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해상교통안전법안
		3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해양관광진흥법안
		3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미용사법안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상담사법안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34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심리사법안
		38	심리상담사법안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66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6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71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34호

최 승 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2.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은행의 신용공여 이용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의 인식 부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참고자료

<은행업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상반기
건수	신청	549,609	714,141	935,883	888,619
	수용	207,455	225,481	246,760	220,797

주)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을 합한 건수임.

2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72호

전 해 철

선 거 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9대,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4.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제3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직접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12조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34호

김 정 호

선 거 구	경남 김해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12.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참고자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정의 >

원사업자 (§2 ②)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가 아닌 사업자** 또는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 (§2 ③)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규정 적용 주요 사례 >

구분	적용 사례
국제카르텔 사건	- 항공화물운임 담합(2010년) - TFT-LCD(초박막액정 표시장치) 담합(2011년) - CRT(브라운관 유리) 담합(2012년) - 자동차부품(베어링) 담합(2014년) - 자동차 해상운송 입찰담합(2017년) - 콘덴서 담합(2018년) 등

기업결합 사건	- BHP Biliton-Rio Tinto 회사설립 건(2010년) - Microsoft-Nokia 영업양수 건(2015년) - AMAT-TEL 합병 건(2015년) - Dow-Dupont 합병 건(2017년) - Quallcomm-NXP 영업양수 건(2017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12년)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17년) -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0년) -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1년)
불공정행위 사건	-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15년) - 핫토이즈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2019년) -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2021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17호

김 영 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25.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 · 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이에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NSF(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 ·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 · 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효율적 연계 및 육성을 위한 지역기술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 · 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연구사업의 보안 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참고자료

< 주요 기술수준 평가 결과 (KISTEP('20)/IITP('19) 등) >

이차전지	(日)100 〉 **(韓)96.0** 〉 (美) 82.5	5G·6G	(中)96.7 〉 (EU)95.3 〉 **(韓)92.1**
반도체 ·디스플레이	(美)97.5 〉 (日)93.4 〉 **(韓)91.3**	인공지능	(中)91.8 〉 (日)88.2 〉 **(韓)87.4**
수소	(美)95.0 = (EU)95.0 〉 **(韓)75.0**	합성생물	(日)81.1 > (中)72.7 〉 **(韓)71.1**
양자	(中)93.2 〉 (日)90.4 〉 **(韓) 62.5**	우주	(日)82.7 〉 (中)80.8 〉 **(韓)5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국가전략기술" 정의규정 비교>

조승래의원안	제정안(김영식의원안)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 · 안보 측면의 가치가 현저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 ·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국가 생존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어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 · 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 ·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국가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제정안 비교>

	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범위	**전략기술 全 분야** (양자, AI, 우주 등)	공급망 산업 (반도체, 배터리 등)
수단	**R&D·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	특화단지(생산시설), 세제, 기술보호 등
해외사례	**美 기술개발촉진법**(Science Act)	美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Act)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자료]
1. 주요국 전략기술 관련 법 제정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와 과학법)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연구

혁신 포괄 종합적 지원 법안
○ (재정 지원) 5년간 **반도체 527억$** + AI·양자 등 핵심기술 개발 약 2,000억$*
* 국립과학재단(기술개발, R&D 인프라) 810억$, 에너지부 680억$, 표준연(표준개발) 100억$ 등

○ (반도체 산업지원) 반도체 **R&D, 세금공제**(10년간 약 30조원) 및 **가드레일 조항***
* 인센티브 수혜 기업이 국가 안보 위협국가에 10년간 생산 시설을 확장

구축하는 것을 금지
○ (핵심기술)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미국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10가지 기술 선정**
* 연례 평가하여 필요시 업데이트

①AI/머신러닝/자율화(Autonomy) ②고성능컴퓨팅/반도체/첨단컴퓨터HW · SW ③양자정보과학기술④로봇공학/자동화/첨단제조 ⑤자연/인공 재해예방 · 완화	⑥첨단통신/실감기술,⑦생명공학/의료기술/유전체학/합성생물학 ⑧데이터저장 · 관리/사이버보안⑨첨단에너지(배터리, 첨단원자력발전 등) 첨단소재과학(복합재, 2D소재 등)

○ (과기 거버넌스 강화) **국립과학재단 內 기술혁신국*** 및 연구보안정책실 신설, **백악관 과기정책실** 주관 4년 주기 **국가과기전략** 수립 및 평가 실시
* 핵심기술 중심 기술개발, 기술이전, 지적재산 보호, 테스트베드 구축, STEM 인재양성 지원

- **기술육성 지원 가속화**를 위한 **조직**(부처 內 실·국 단위) **신설, 역할 분담** 등 명시

(경제안보추진법) 공급망 안보 위한 기술보호 및 특정중요기술 선정 추진

○ (공급망 강화)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내 생산 지원** 및 지원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 공급 우선**

○ (특정중요기술) **국가안보 위협** 및 연구개발 정보 해외유출·악용이 우려되는 기술을 선정, **연구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통한 민간기업 지원 강화**
* 총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보기금 조성, 집중 투자
** 기술분야 프로젝트별 설치 → **정부 보유기술 이전 · 공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20개 기술** 대상 **우선순위 도출 중,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 신설 추진('23년)

①수송·이동 : ▲극초음속 ▲수송 ②컴퓨터 : ▲AI·머신러닝 ▲첨단컴퓨팅 ▲반도체 ▲양자 ③인체 : ▲의료·공중위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④영역(domain) : ▲우주 ▲해양 ⑤에너지 : ▲첨단에너지 ▲화학·생물·방사성물질 및 핵	⑥네트워크 : ▲첨단감시·측정·센서 ▲데이터과학, ▲고도정보통신 ▲사이버보안 ⑦공학·소재 : ▲바이오 ▲첨단엔지니어링·제조 ▲로봇공학 ▲첨단재료

○ (연구비전) **기술확보 필요성, 실현 가능성**(연구인력·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R&D 추진여부, 연구목표** 판단 → R&D프로젝트 등으로 연계

2. 부처별 전략기술 체계 및 주요내용

□ 기술체계별 주요내용

	기술체계	근거법률 (담당부처)	목적	지원·조치내용
육성	신성장· 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기재부)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기재부)	국가전략기술 분야 민간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점과학 기술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정통부)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중점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	R&D 중점투자, 기술수준평가, R&D조사 · 분석의 대상기술
	첨단기술	산업발전법 (산업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집약산업 육성	자금·조세·입지지원
	핵심전략 기술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 도모	세제·사업화·실증지원, 특화단지 지정, 특별회계 설치
	미래도전 국방기술	국방과학기술혁신법 (국방부·방사청)	방위력개선 및 전력지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	협력체계구축, 시설·장비 확충, 장려금 지급

육성·보호	첨단전략 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기술육성, 특화단지, 세제지원, 인력보호 등
보호	국가핵심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	수출허가, 외국인투자제한, 해외M&A, 인력관리 등
	방위산업 기술	방산기술보호법 (국방부·방사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기술유출 · 침해방지, 수출 및 국내이전 허가·관리, 인력관리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가전략기술 개념 및 기준

공급망·통상	신산업 선점	국가안보
우리 대외경쟁력 및 경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아, **공급망·통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기술	기술혁신과 상용화에 따라 **급격한 시장성장**이 전망되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혁신** 기술	첨단무기체계 등 **국방분야 활용성이 높고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의거 **자립화 능력**이 필수적인 **국가안보** 기술

공급망·통상 : 현재, 우리경제 내 중요성이 높아 위협관리 필요기술

❶ **(대외경쟁력) 우리경제·산업 비중**이 커 **지속적 기술변혁**에 대한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고, **글로벌 통상체제에서 지렛대**로서의 가치를 갖는 기술

❷ **(대체불가능성)** GVC 내 **주요기술**의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 **공급망 및 국제협력 교란 시** 국가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기술

신산업 선점 : 미래, 파급력이 높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❶ **(신산업 잠재력)** 해당 기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기술선점 및 **국제표준 선점**이 **시장주도권**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❷ **(혁신 영향력)** 기술진보 및 상용화 시 **기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및 **타 분야에 응용가능성**이 높아 **미래 패러다임 전환**(대체·재편)에 기여할 기술

국가안보 : 국방 활용성, 국가 간 수출통제로 자립능력이 필요한 기술

❶ **(국방 활용도) 무기체계 적용** 등 **국방분야**에 **활용가능**하고, 미래전장 적용 시 **획기적인 전투력 강화**가 가능한 '게임체인저'로서의 기술

❷ **(기술도입 난이도)** 외교·안보 등 공공 측면 중요도가 높으나, **제조약·통제체제** 및 동맹블록화로 인해 **거래·도입 난이도**가 높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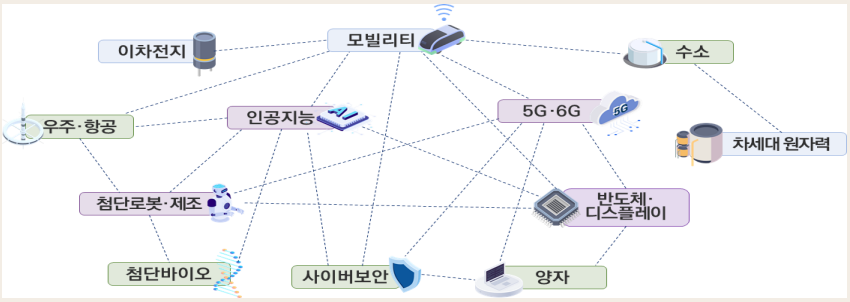

※ 기존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수요(3건) 기술 중 **전략성이 높게 평가**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해** 12개 분야로 재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73호

허 은 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9.01.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실의 물리적 서비스와 연동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메타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에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의 거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며,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메타버스 접속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안 제24조).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17호

윤 영 찬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9.08.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참고자료

<사업자별 트래픽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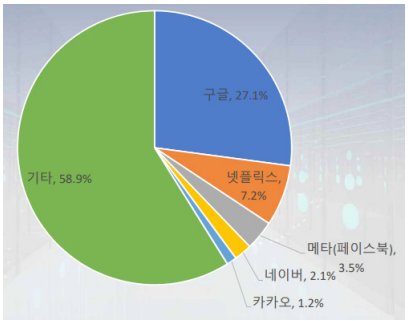

<서비스별 트래픽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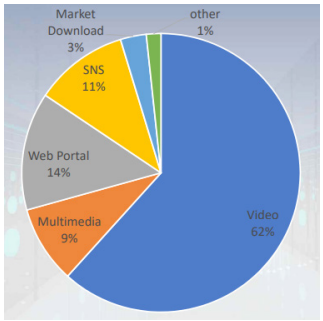

출처: 과기정통부 '22.2월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838호

박 성 중

선 거 구	서울 서초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10.18.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카카오의 SNS, 결제 서비스, 모빌리티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래픽 발생량 증가에 의한 과부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화재 또는 전쟁 등에 의한 물리적인 문제 발생 시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 조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자료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경과>

<10.15(토)>
- 소방당국, 데이터센터 화재 진화 착수 및 진화 완료(18:49)
- 과기정통부, 장애사실 인지 즉시 장애 복구 상황 점검 및 독려 등 조치, 이후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구성

<10.16(일)>
- 유독가스 등으로 익일인 16일부터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 순차적 재개 및 서비스 복구 시작(01:30)
-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격상(실장→장관), 장관 화재복구 현장점검(1차 대책본부 점검회의), 야간 점검회의(2차) 실시

<10.17(월)>
- 과기정통부, 행안부·방통위·소방당국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 서비스 복구현황 및 해킹 주의 등 관련 재난문자 발송
- 전문가 사고조사반* 구성 및 사고조사 착수* IDC 화재원인 분석 전문가(소방, 전기) 등 현장 조사 실시

<10.19(수)>
- 카카오 ·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 정상화
- 카카오, 대표이사 사퇴 및 대국민 사과, 피해 신고 채널 개설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주요 사례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포털, SNS, OTT, 클라우드,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주요 사업자	SKT, KT, LGU+ 등 알뜰폰, 인터넷전화 등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 아마존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사업자, 쿠팡 등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 등
사업자 수	652개	16,002개
사업수행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재난관리 관련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없음

<사업자별 적용되는 재난관리 체계 [1]>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사업자	11개	5개(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이용자 100만 및 트래픽비중 1% 이상)
예방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과(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예비전원설비 확보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훈련	매년 모의훈련계획 수립	-
주기적 점검	재난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매년 점검	-
	수시점검 가능	-
대응	통신재난 신고 의무 부과	-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가능	서비스 중단 혹은 장애 발생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재난대응인력 운용계획 수립	-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서 위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음.

의 안	범 위	비 고
조승래의원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요건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최승재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요건 위임

1)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성중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	대통령령으로 요건 위임

의 안	범 위
조승래의원안	데이터센터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의 확보
최승재의원안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박성중의원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83호

김 영 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9.01.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은 2009년 한국 시장에 출시된 이래 우리 일상생활을 모두 모바일 중심으로 바꾸었고,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됨.

스마트폰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운영체제-앱 마켓-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에 충성고객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사이에 거래상 지위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은 스마트폰 이전에는 많은 제조사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으나,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짐.

이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특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새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는 결국 국민의 통신비용으로 다시 전가됨으로써 통신기본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참고자료

참고자료1 동의의결 제도 참고[2)]

□ 동의의결제도 개요

○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절차)**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2) 공정거래위원회, 2021.2

□ 동의의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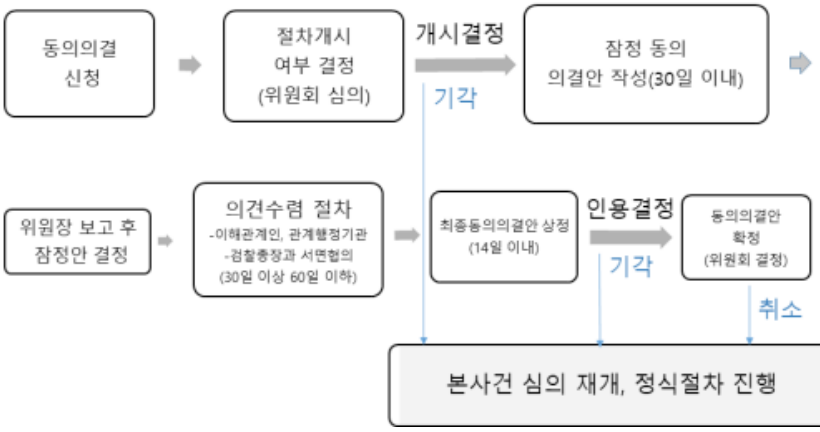

참고자료2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내용 요약** [3]

구 분	주 요 내 용	구 체 적 시 정 방 안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광고기금 부과	• 광고기금 대상제품에서 일부 제외 • 광고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 •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 조정 •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절차를 규정 • 사정변경에 따른 조정절차 도입 •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 규정 • 광고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 도입
	보증수리 촉진비 부과	삭제
	특허허여	•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일방적 해지권	삭제
	최소보조금 설정	• 최소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 사정변경에 따른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 도입 • 최소보조금 위반시 해결절차 도입 • 이통사의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발전기금 조항 삭제
	이통사 광고기금 설정	•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 부여 • 이통사 광고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할 신청인의 의무 규정 •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 마련 •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 • 계약종료시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방식 규정

3) 공정거래위원회, 2021.2.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방안 (총 1,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디벨로퍼 (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 •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100억원)	•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 제공된 기기의 파손을 대비하여 AppleCare+ 2년 무상제공 * 구체적 지원 대상 선정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소비자 편익 증대 -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원)	•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함 • AppleCare+ 구입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
이행점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행감시인이 3년간 이행상황을 점검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63호

안 병 길

선 거 구	부산 서구동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3.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62호

안 병 길

선 거 구	부산 서구동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3.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제4항 및 제5항 각각 신설).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852호

서 삼 석

선 거 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2.10.	제안
상임위원회	2022.04.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9.15.	소위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2.09.26.	상정
안건조정위원회	2022.10.12.	상정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2.10.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 법령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약 383만 톤)이 전년대비 9.1% 증가하고, 쌀 추정수요량(약 360만 톤)을 약 6.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 톤)는 2017년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참고자료

[표 1] '21년 쌀 생산 현황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생산량 (천톤)	'21년	3,882	383	156	175	773	594	790	518	339	155
	'20년	3,057	348	127	161	678	556	688	495	314	140
전년비(%)		10.7	9.9	22.1	8.9	14.1	6.9	14.8	4.6	7.8	11.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2] 수확기 산지쌀값('21.10.5.~'21.12.15.)

(단위 : 원/20kg, %)

구분	10.5	10.15	10.25	11.5	11.15	11.25	12.5	12.15	12.25
`21년	56,803	55,107	54,154	53,643	53,440	52,998	52,586	51,826	51,254
`20년	54,822	53,574	53,489	53,851	53,955	54,196	54,327	54,419	54,455
평년	44,798	44,399	44,402	44,621	44,741	44,803	44,897	44,931	44,967

증감률	전순비	5.6	△3.0	△1.7	△0.9	△0.4	△0.8	△0.8	△1.4	△1.1
	전년비	3.6	2.9	1.2	△0.4	△1.0	△2.2	△3.2	△4.8	△5.9
	평년비	26.8	24.1	22.0	20.2	19.4	18.3	17.1	15.3	1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3] 산지쌀값('22.1.5.~'22.4.15.)

(단위 : 원/20kg)

1.5	1.15	1.25	2.5	2.15	2.25	3.5	3.15	3.25	4.5	4.15
50,889	50,741	50,703	50,667	50,592	50,334	50,128	49,904	49,210	48,464	47,774

※ 자료: 통계청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양수 위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굉장히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면서 이 법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정훈 위원

무슨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 이양수 위원

야당 측의 일방적 날치기 법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간사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29일 야당 측의 일방적 1차 안건조정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당, 위원장 선출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 야당 측 일방적 2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12일 야당 측은 일방적으로 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이틀이면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그 뒤에 날짜를 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자,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당장 이를 모면하기 위해 쌀 산업의 미래는 나 몰라라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흉작으로 약 10만t의 수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예상됐는데 2021년 총 31만t의 정부양곡 공매로 초과 공급된 물량이 2022년으로 이월돼서 민간 재고가 급증하고 결국 쌀값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1년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해서 수확기 수급 과잉이 예상됨에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에서야 뒤늦게 시장격리를 결정합니다. 이후 실제 시장격리는 2022년 2월과 5월에 추진됐고 그나마 5월 시장격리는 현 정부가 인수위에 요청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쌀값 하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 정부에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됩니다. 즉 이 법은 쌀 증산법입니다. 쌀 과잉 공급 법안

입니다.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증가된 쌀을 정부가 사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미래의 농업 투자가 감소됩니다. 쌀 사느라고 모든 돈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쟁력 저하가 악순환될 뿐입니다.

쌀은 수요 감소에 비해 공급 감소 폭이 작아서 평년작만 되어도 20만t이 과잉 공급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절대 문제 해결이 곤란합니다.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이 0.7%입니다. 1인당 소비 감소율은 2.2%입니다. 소비가 줄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는 이런 법안을, 이게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벼는 타작물에 비해 재배는 쉬우면서 소득률은 높아서 진입이 쉬운 특성을 가진 품목입니다. 격리 의무화로 판로 걱정이 줄면 벼농가는 계속해서 쌀을 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논면적이 82만ha인데 벼를 재배하는 면적은 72만ha입니다. 10만ha는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10만ha 타작물 재배하는 면적도 전부 다 논면적으로, 벼 재배로 돌아설 것입니다.

(중략)

태국의 경우에 2011년 잘못된 쌀 수매 정책 시행으로 과도한, 쌀값이 상승해서 재정적자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이 법과 태국의 제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의 수매제도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쌀을 사 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화를 부과했다는 차원에서는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중략)

■ 서삼석 위원

이미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적어도 여야 위원님들의 양식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장의 사회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돼야지 정말 후덕한 인심처럼 의사진행발언권만 줘 가지고는 오늘 회의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없는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일선 농민들,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이, 방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약한 편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 쌀 산업은 대한민국 쌀이 주식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했으면 뭔가 차원 높게 여야 위원들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서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24호

강 병 원

선 거 구	서울 은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25.	제안
상임위원회	2022.11.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 ·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참고자료

참고 **1. 주요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 [1)]

□ **프랜차이즈 외식 분류별 처분 현황** * 각 분류별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구분	매장수	2018	2019	2020	2021	2022.6.	계	위반율
치킨	11,496	193	201	202	217	95	908	1.74%
패스트푸드	4,506	125	153	109	93	47	527	2.55%
분식	4,802	135	129	112	106	30	512	2.26%
한식	4,915	95	103	106	92	32	428	1.87%
카페	12,048	92	104	88	91	44	419	0.77%
피자	4,008	69	60	64	43	24	260	1.42%
중식	1,007	22	41	28	51	14	156	3.38%
일식	932	40	41	34	27	11	153	3.52%
양식	543	11	8	9	19	9	56	2.39%
계	44,257	782	840	752	739	306	3,419	1.68%

⇒ 9개 분류 프랜차이즈의 업소수 대비 **평균 위반율**은 **1.68% 수준**이고, **행정처분** 건수는 **치킨**이 **가장 많으나, 매장수 대비**해서는 **일식**이 **가장 위반율이 높음.**

□ **프랜차이즈 위반유형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계
기준 및 규격 위반	135	225	227	300	115	1,002
위생교육 미이수	190	198	198	148	62	796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 분류별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분류 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7	100	69	76	36	408
건강진단 미실시	130	104	81	62	30	40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0	57	60	52	16	245
무단멸실	58	53	47	43	24	225
영업변경신고 위반	33	55	48	26	13	175
시설기준 위반	45	33	20	30	7	135
표시·광고 위반	4	9	1	-	1	15
위해식품 판매금지 위반	-	6	1	1	2	10
무신고	-	-	-	1	-	1
계	782	840	752	739	306	3,419

⇒ **연도별 행정처분**은 **추세**는 **크게 변함없고, 기준 및 규격 위반(1002건)** 중 대부분이 **이물 혼입(878건)**으로 **약 88% 차지함**.

-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무단멸실, 영업변경신고 위반 등 **영업자의 행정적 사항(1,603건)**이 **미흡이 47%** 차지함.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547호

진 선 미

선 거 구	서울 강동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10.27.	원안가결
	2022.11.04.	정부이송
	2022.11.15.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에서 2019년 51.7%로 증가하였으며, 2015~2019년간 5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였음.

현행법령은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적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25%에 불과함.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지시·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7조제3항, 제117조제1항 및 제5항).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 비율】

(단위 : 건수, %)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236,169	48,270	51,401	48,879	43,617	44,002
운전자	235,199	48,217	51,251	48,601	43,411	43,719
비율	99.59	99.89	99.71	99.43	99.53	99.36
차주	224	21	80	59	29	35
비율	0.09	0.04	0.15	0.12	0.07	0.08
화주	746	32	70	219	177	248
비율	0.32	0.07	0.14	0.45	0.40	0.56

자료: 국토교통부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06.03 / 2022.10.27
■ **발의자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 **표결 의원** : 재석 206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06인(찬성 201인, 반대 0인, 기권 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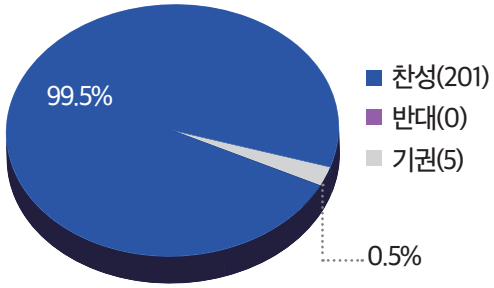

찬성 (201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 용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의원

기권 (5인)

김 웅 안병길 임이자 조명희 조수진 의원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7938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10.27.	원안가결
	2022.11.04.	정부이송
	2022.11.15.	공포

제안이유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며, 성능·상태점검을 하기 위한 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의2제2호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

라.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2항).

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안 제58조제5항제1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7항, 제80조제9호의2 및 제84조제4항제22호의2 · 제22호의3 신설 등).

사. 현행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록 · 관리 및 보존과 그 내용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아.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등).

자.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 · 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6호 및 제73조제4호 신설).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침수 전손자동차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수출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말소등록 자동차의 수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6조의2제항은 침수 전손자동차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수출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의 준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수출업자 등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수출이 금지되는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에 포괄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출금지 의무 준수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출금지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10.26 / 2022.10.27
■ **발의자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03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03인(찬성 202인, 반대 0인, 기권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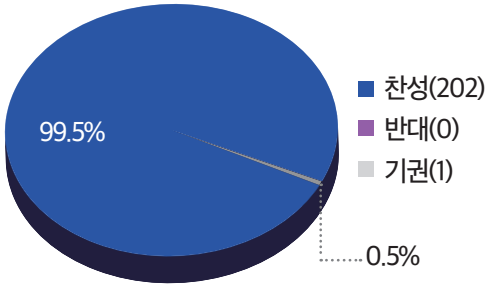

찬성 (202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윤덕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양수 이 용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 의원

기권 (1인)

최재형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11월호는 2022.10.17.부터 2022.11.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31일	11월1일	2일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4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국회본회의						● 제400회 제10차			● 제400회 제11차										● 제400회 제12차		
국회운영위원회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정무위원회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	●	●	● ●		
국방위원회											●		●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			●	●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보건복지위원회			●		●		●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	●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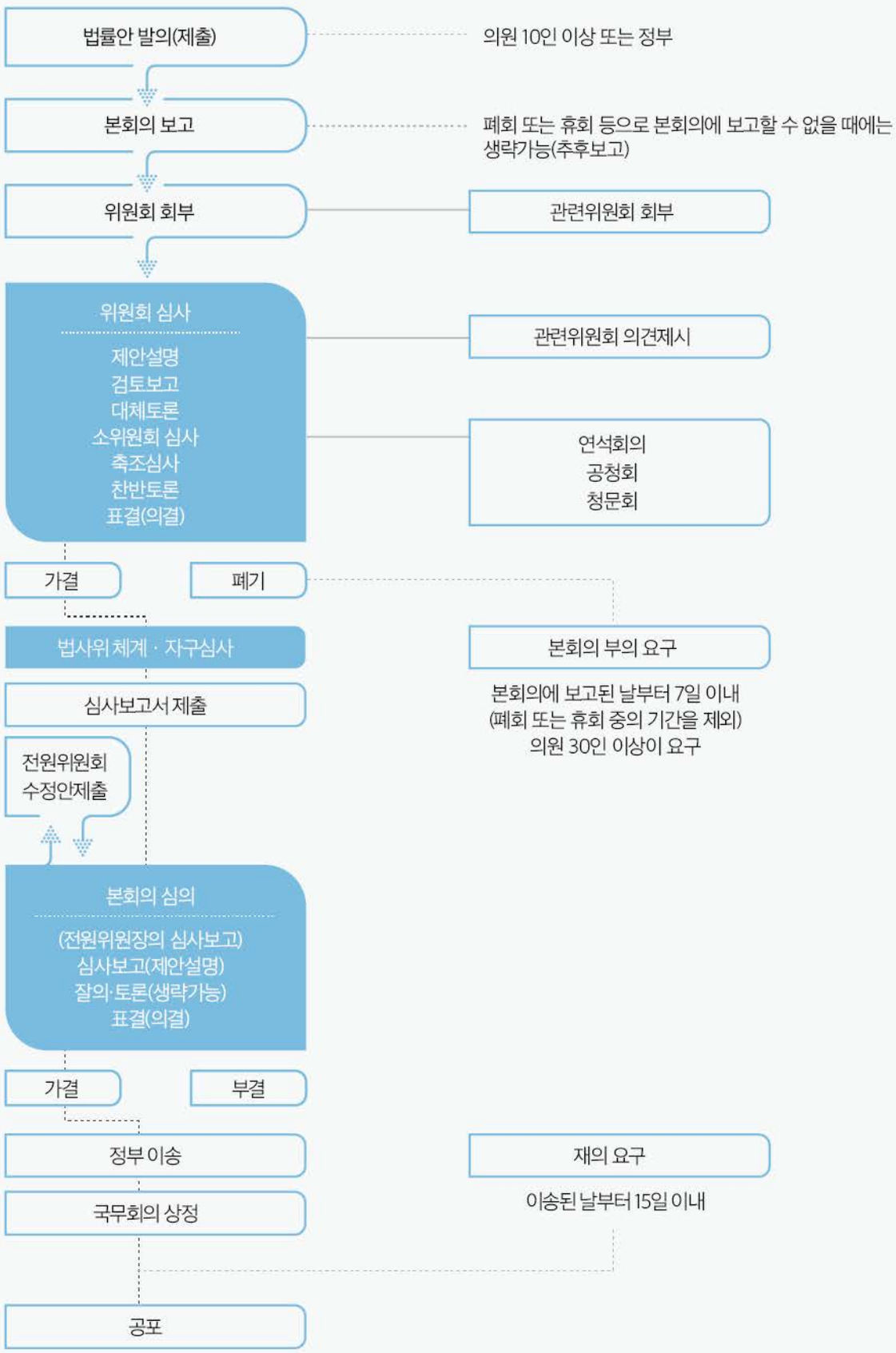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www.draju.com